

인천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합59444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권재상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36,935원 및 그 중 220,336,935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나머지 53,9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5.부터 각 2024.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676,300원 및 그 중 225,666,3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29,0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 1) 피고(소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는 2021. 3. 말경 인천 연수구 B 일원에서 C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 2)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입찰에 참가한 뒤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21.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금액 321,347,260원, 착공일자 2021. 4. 13., 준공일자 2021. 10. 9.,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05%'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21. 10. 6.경 피고와 사이에 관급자재(철근) 수급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일자를 2021.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11. 26. 재차 동일한 사유로 준공일자를 2021. 12. 13.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가 2021. 7. 8.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시트파일(Sheet Pile)을 지하에 향타하던 중 피고가

종전에 설치하였던 스마트시티 통신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이하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이 사건 통신관로', 위 통신케이블 절단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자인 2021. 12. 13. 피고에게 준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4. 원고에게 시정조치(보완)사항으로 '차도부 포장 미완료, 환기구 외부 마감재 미시공, 보도부 포장 미완료 등'을 통보(이하 '1차 시정조치 통보'라 한다)하고 준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1. 12. 22.경 보도부 포장을 완료하고, 2021. 12. 24. 환기구 외부 마감재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22. 1. 17.경 차도부 포장 및 차선도장을 완료하여 2022. 1. 18.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시정조치(보완)사항으로 '이 사건 사고로 절단된 통신관로의 원상복구 시행, 가시설 계측 결과보고 보완 등'을 통보(이하 '2차 시정조치 통보'라 한다)하고 준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통신관로를 복구한 뒤 2023. 7. 18.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2023. 7. 27.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23. 8. 10.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343,83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3 내지 15,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25,666,300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43,83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8,163,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통신관로를 복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4,676,300원(= 미지급 공사비 225,666,300원 +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통신관로 복구공사비 329,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100,914,015원{= 1일 지체상금 171,915원(= 공사계약금액 343,830,000원 x 지체상금율 0.05%) X 준공예정일 2021. 12. 17.부터 실제 준공검사일 2023. 7. 27.까지의 지체일수 587일} 및 원고의 부실복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275,110,000원(= 감정서상 복구비 329,010,000원 - 원고가 지출한 복구비 53,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25,666,300원과 상계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는 남지 않게 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25,666,300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343,83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8,163,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25,66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복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귀책사유 주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1)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통신관로를 파손하거나 통신선의 기능에 장애를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일반시방서 13항(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2)'과 '특별시방서 제7장 3. 3. 2. 다항(가설흙막이공, 시공 공통사항)3)'에 따른 '실제 매설물의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설계도상 이상 유무를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감독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이 사건 통신관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계도상으로도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시험터파기 공사를 통해 상수관, 오수관 이외의 지하매설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사가 용이한 임의 지점으로 만연히 2021. 6. 21. 한 차례만 시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일보에 시험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신관로의 매설이 예상되는 곳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시행한 시험터파기 공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상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소관부서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요지하매설 관리자와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2021. 5. 31. 연수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로굴착허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과정에서 이 사건 통신관로 설치부서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와 협의한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절차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통신관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소장 E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하여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F 인천안전관리팀, G 연수지점,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전력공급부 등의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입회요청 및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된다.

⑥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지장물도상으로도 상수도관 외에 이 사건 통신관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연수구청의 지하매설물 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연수구청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통신관로의 설치부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와 이 사건 공사의 소관부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가 동일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내부적으로 충실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피고는 '일방시방서 14. 바항(가설공사)4', '특별시방서 제7장 1.6.3. 가항(가설흙막이공, 시설물 보호)5' 및 '특별시방서 제7장 3.3.3. 가항(가설흙막이공, 지중시설물의 보호)6'에 따라 가설공사시 지중시설물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지중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귀책사유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복구비용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통신관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I 주식회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53,900,000원이나,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통신관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329,01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신관로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복구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보전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감정인 D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통신관로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 수치인 반면, 원고가 I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통신관로의 복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5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감정에 따른 복구공사비가 329,010,000원임에도 원고가 53,900,000원만을 지출하여 부실 복구를 한 것이라면 원고가 그 차액인 275,11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부실하게 이 사건 통신관로를 복구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기초한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지체상금채권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이후로써 피고가 2022. 1. 21.자 공문을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2021. 12. 17."부터 원고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2023. 7. 27."까지의 지체일수 총 587일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100,914,105원(= 1일 지체상금 171,915원(= 공사계약금액 343,830,000원 x 지체상금율 0.05%) x 587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이유는 피고가 관급자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통신관로 복구공사는 원고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 일을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수급인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3)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미 두 차례 관급자재(철근) 수급 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일자를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관급자재 수급 지연을 이유로 준공일자를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요청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관급자재들로 인하여 실제로 차질을 입은 공사의 구체적인 공정 및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뒤에서 보는 2022. 1. 17.까지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지체상금의 액수

가) 지체상금의 시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2021. 12. 13.)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21. 12. 17.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체상금의 종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1. 17. 1차 시정조치 통보에 따른 차도부 포장, 환기구 외부 마감재 시공, 보도부 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2022. 1. 18.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2차 시정조치 통보 당시에는 위 공사들을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22. 1. 21. 2차 시정조치 통보로써 원고 측에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통신관로의 원상복구 시행, 가시설 계측 결과보고 보완 등'을 요구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신관로의 복구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통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2차 시정조치 통보를 통해 요구한 '가시설 계측 결과보고 보완'은 2021. 9.경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의 미완료로 인한 보완사항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2차 시정조치 통보는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차 시정조치 사항을 완료한 2022. 1. 17.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2022. 1. 1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액수는 2021. 12. 17.부터 2022. 1. 17.까지 지체일수 총 31일에 대하여 산출한 5,329,365원(= 1일 지체상금 171,915원(= 공사계약금액 343,830,000원 x 지체상금율 0.05%) x 2021. 12. 17.부터 2022. 1. 17.까지의 지체일수 31일)이 된다.

5) 상계처리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계적상으로서의 '이행가 도래한 때'에 있게 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25,666,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329,365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22. 1. 17.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24. 7.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24. 7.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0,336,935원(= 미지급 공사대금 225,666,300원 - 지체상금 5,329,365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236,935원(= 공사대금 220,336,935원 + 통신관로 복구공사비 53,900,000원) 및 그 중 220,336,9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22. 1. 18.부터, 나머지 53,9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김정윤, 판사 나경식

1)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3)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관리자의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 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한다.

6)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